

다산학 39호 (2021.12) | 113~166

가장본家藏本『춘추고징春秋考徵』과 『민보의民堡議』의 문헌적 검토

박종천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목차

1. 머리말
2. 『춘추고징』 필사본과 가장본에 대한 문헌적 검토
3. 가장본 『민보의』에 대한 문헌적 검토
4. 맺음말

1. 머리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필사본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김영호 선생이 가장본家藏本 텍스트의 특징과 신조선사본『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와의 관계에 대한 선구적 업적을 발표하면서 그 연구사적 중요성이 학계에 인식되었으나,¹⁾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본定本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간행을 위해 다양한 필사본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성과는 총37책의 『정본 여유당전서』의 간행과 더불어 다양한 필사본들로부터 신조선사본『여유당전서』에 이르는 다산 저작의 형성과 전승을 탐색하는 박사학위논문²⁾과 단행본³⁾으로 출간되었다. 이를 통해 다산 저술의 문헌적 특징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다양한 필사본들의 전승 과정 및 양상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산 저작 필사본 중에서도 다산이 직접 집필과 수정에 관여했던 가장본들, 특히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김영호 소장 필사본(이하 김영호본⁴⁾)들을 자료로 삼아 선행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확인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⁵⁾ 본 연구

1) 김영호, 「『여유당전서』의 텍스트 검토」, 『정다산 연구의 현황』, 민음사, 1985.

2) 김보름, 「丁若鏞 著作集의 形成과 傳承」,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16.

3) 다산학술문화재단 편, 『다산 필사본 연구』, 사암, 2019 참조.

4) 김영호본은 버클리본을 포함해서 다산 집안에서 소장하던 가장본 가운데 일부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른 가장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김영호 선생 소장 필사본을 부르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5) 황병기, 「『역학서언易學緒言』의 성서成書 과정 연구—가장본家藏本을 중심으로」, 『다산학』 3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0; 윤석호, 「가장본家藏本『경세유표經世遺表』의 서지적 검토(1)—책제冊題 변화 전후의 집필 과정을 중심으로」, 『다산학』 3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0; 노경희, 「『대동수경大東水經』의 이본과 서지적 성격 연구」, 『다산학』 37호, 다산학술

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새롭게 그 실체가 확인된 가장본인 김영호본을 중심으로 『춘추고징春秋考徵』과 『민보의民堡議』의 필사본들을 문헌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는 앞서 『춘추고징』 필사본 전승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⁶⁾ 첫째, 『춘추고징』 필사본에는 겉표지가 ‘사암경집侯菴經集’으로 기록된 사암경집 계열의 필사본과 겉표지가 ‘여유당집與猶堂集’으로 쓰인 여유당집 계열의 필사본이 있는데, 1830년까지의 수정과 추가 내용까지만 반영된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들이 1833년 이후 새로운 수정과 추가 내용이 반영된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들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선행본들이다. 둘째, 신조선사본 『춘추고징』은 1833년의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이 아니라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유당집 계열의 필사본은 실물로 발견되지 않아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⁷⁾

또한 필자는 초고본, 수정고본修訂稿本, 정고본定稿本, 전사본傳寫本 등의 필사본에서 신조선사 연활자본에 이르는 다산 저작의 전승 과정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과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의 관계를 초고본과 수정본, 정고본과 전사본 등으로 개괄한 바 있다.⁸⁾ 이 연구에서 필자는 10행 22자, 3권=1책, 1권 20장 내외 분량을 지닌 정고본 형식을 가장본의 특성으로 제시한 김영호의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정약용의 직접적인 집필, 편집, 수정 지시에 따라

문화재단, 2020 등 참조.

6) 박종천, 「다산 예집(禮集) 저술의 필사본 전승사 연구」, 『다산학』 2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318~325쪽 참조.

7) 같은 논문, 322쪽.

8) 같은 논문, 318~320쪽 참조.

『열수전서』출간을 위해 정리된 ‘정고본 계열 필사본’이라는 표현을 썼다. 아울러 다산 집안에서 수장하던 가장본 중에서도 간행 직전에 최종 완성까지 여러 번의 편집과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수정고본을 정고본으로 표현하되, 초고본 이후 정고본에 가까운 중간 수정고본들을 정고본 이후의 전사본 혹은 변형본들과 구분하여 정고본 계열 필사본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가정에 따라 필자는 선행 연구를 통해 버클리본이 사암경집본으로서 정고본定稿本 직전의 교정 양상을 보여주는 가장본이며, 규장각 필사본은 버클리본의 전사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⁹⁾ 좀더 정확히 말하면, 버클리본의 표지는 다산 친필로 보이고, 본문은 다산의 제자들 중심으로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고본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최종 수정이 이루어진 정고본 이전 단계로 최종 수정고본은 아니며 정고본 계열의 필사본이다. 선행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정약용의 다른 필사본들처럼 현존하는 『춘추고정』의 필사본은 모두 다산 친필의 수고본이 아니라 제자들 중심으로 필사한 청고본淸稿本이다.¹⁰⁾ 특히 사암경집 『춘추고정』 버클리본은 정고본 직전의 수정고본이며, 사암경집 『춘추고정』 규장각본(규4919)은 버클리본의 전사본이다. 아사미문고본으로 불리는 버클리본들이 대개 그러하듯이,¹¹⁾ 사암경집본 『춘추고정』 규장각본은 글자체나 형식을 살펴볼 때 조선총독부 참서관본실 등사본으로서 버클리본을 등사한 것이 확실하다. 또한 『춘추고정』의 편집 체재와 기록 내용면에서 신조선사본은 버클리본을 저본으로 삼지 않고 다른

9) 같은 논문, 323-324쪽 참조.

10) 박철상, 「다산 저작 고본의 제문제」, 『다산 필사본 연구』, 사암, 2019 참조.

11) 노경희, 「다산 저술의 형성과 유전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다산 필사본 연구』, 사암, 2019, 57-66쪽 참조.

고본稿本을 저본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되며, 버클리본은 신조선사본의 저본보다 앞선 단계의 고본으로 보인다.¹²⁾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의 토대 위에서 선행연구에서 가설로 제기되었던 논점을 보완하면서 『춘추고징』의 편찬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최근 새롭게 그 존재가 확인된 김영호본 『춘추고징』이 바로 필자가 선행연구에서 그 존재를 추정했으나 실제 실물로 확인하지 못했던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이자 신조선사본 『춘추고징』의 저본이라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춘추고징』 필사본의 전승사를 더욱 상세하게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형식 서지적 차원과 본문의 문자 대조, 목차 및 본문의 편집과 수정 양상 등의 비교를 통해 필사본의 발전 양상과 계통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춘추고징』 필사본이 3차 수정고본인 사암경집 버클리본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자 가장본이고, 사암경집 『춘추고징』 규장각본은 3차 수정고본을 조선총독부에서 필사한 사암경집 등사본이며, 김영호본은 버클리본의 편찬을 일정하게 수정하고 추가 보완한 4차 수정고본이이고,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는 김영호본을 저본으로 만든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

한편, 『민보의』 필사본에 대한 선행 연구¹³⁾를 기반으로 삼아서 역시 최근에 새롭게 그 실물이 확인된 김영호 소장 가장본 『민보의』 필사본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특히 이 필사본을 중심으로 기존의 가장본 필사본들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민보의목차」를 중심으로 『민보의』 필사본들의 전승과 계통을 규명하면서 김영호본이 출간을 대

12) 박종천, 앞의 논문; 「춘추고징 해제」, 『정본 여유당전서 14: 춘추고징』,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6~11쪽 참조.

13) 박종천, 「『민보의(民堡議)』 필사본에 대한 연구」, 『다산학』 12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참조.

비한 정고본 계열의 최종 수정고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춘추고정』, 『상례사전喪禮四箋』,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 등처럼 버클리본이 포함된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이 『여유당전서』의 저본이 아니라 주로 김영호본을 중심으로 하는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이 「열수전서총목록」의 구상을 반영한 『여유당전서』의 저본인 경우가 많듯이,¹⁴⁾ 『민보의』 필사본에서도 사암경집에 상응하는 ‘사암별집侯菴別集’이 김영호본보다 앞선 가장본 계열의 선행본이라는 점도 함께 밝힐 것이다.

2. 『춘추고정』 필사본과 가장본에 대한 문헌적 검토

1) 집필과 수정증보의 과정

: 10권본 『춘추고증』에서 12권본 『춘추고정』까지

『춘추고정』은 현존하는 가장본 필사본으로부터 『여유당전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12권본 형태로 남아 있으나, 처음에는 본래 10권본 『춘추고증春秋考證』으로 집필되었다. 「춘추고정서春秋考徵序」에 의하면, 초본草本은 1808년(순조 8) 겨울에 기초起草하여 둘째 아들 학포學圃, 즉 정학유丁學游(1786~1855)가 받은 것이고, 재고再稿는 1812년 겨울에 정약용의 제자 이강희李綱會(1789~?)의 도움을 받은 것인데, 두 가지 모두 빈례賓禮, 군례軍禮, 가례嘉禮 없이 길례吉禮와 흉례凶禮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14) 박종천, 「다산 예집(禮集) 저술의 필사본 전승사 연구」, 박종천, 「다산의 『논어』 주석서 전승에 대한 연구」, 『다산학』 23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참조.

총10권으로 편정編正한 것이다.¹⁵⁾ 실제로 10권본 체제의 『춘추고증』 재고본(1812)으로 완성된 상태는 정약용이 1817년 4월 27일에 다산초암에서 신영로에게 보낸 「증신영로」에 실린 저작 목록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¹⁶⁾

한편, 10권본 『춘추고증』은 다시 1821년 봄, 1826년 늦겨울, 1830년 봄, 1833년 한가을 등 총 네 차례의 추가 증보增補를 거쳐 총12권본 『춘추고징』으로 완성되었다.¹⁷⁾ 12권본 『춘추고징』의 모습은 1822년에 작성된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集中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다시 1830년대 「열수전서총목록」 시기에 즈음하여 1830년과 1833년에 「체지설禘之說」에 대한 2번의 증보가 추가로 이루어졌다.¹⁸⁾ 12권본 『춘추고징』의 4회에 걸친 추가 수정 및 증보 과정에 대한 정약용의 설명은 각각 다음과 같다.

1차 추가증보(1821): “내가 옛날에 『춘추春秋』의 삼전三傳을 읽다가 그 가운데 오례五禮【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에 관련이 있는 것을 뽑아서 그 뜻이 의심스런 부분을 기록하여 몇 권으로 만들고 『노례고魯禮考』라고 이름 붙였다. 이제 상자에서 그것을 찾아서 경박하고 화려한 부분을 떨어내

15) 『春秋考徵』 권1, 「吉禮」(『定本』 제14책, 32~33쪽). “然其事類繁賾, 條例浩汗, 無以悉舉, 先執吉·凶二禮, 別其大綱, 以正歸趣, 略其零碎, 以示推通. 至於賓·軍·嘉三禮, 舉一可以反三, 苟有同好, 庶其補成, 今不論也. 其草本學圃所受, 【嘉慶戊辰冬, 起草】 其再稿李紘父所相, 【壬申冬, 編正】 書凡十篇, 名之曰『春秋考徵』.”

16) 김보름, 「『여유당집』 체제의 성립에 관한 고찰」, 『다산학』 18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1; 「丁若鏞 著作集의 形成과 傳承」,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16 참조.

17) 이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박종천, 「다산 예집(禮集) 저술의 필사본 전승사 연구」; 「춘추고징 해제」, 6-8쪽 참조.

18) 각주 16-17번 참조.

고 『춘추고정』의 말미에 덧붙인다. 도광道光 신사년辛巳年(1821) 봄.¹⁹⁾

2차 추가증보(1826): “체禘와 교郊에 대한 논쟁은 첫째 편篇에서 언급한 것이 상세하다. 그러나 『주례周禮』에는 ‘체’자가 없고 ‘오제’를 제사한다(祭五帝)’고 일컫는 것이 바로 초楚나라 관야보觀射父가 말한 ‘체교의 체’이거늘, 원편原篇에는 미처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늘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뒤에 진혜전秦蕙田(1702~1764)이 편집한 『길례통고吉禮通考』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논한 체와 교의 뜻이 더욱 많이 그릇되고 망령되었다. 비록 모두 원편에서 이미 분석한 것이지만, 다시 잘 다듬어서 『춘추고정』의 끝부분에 덧붙인다. 도광道光 6년 병술丙戌(1826)년 늦겨울.²⁰⁾

3차 추가수정(1830): “내가 옛날 다산茶山에 있었을 때에는 여덟 가지 체禘에 대한 오류를 논하면서도 『주례』의 ‘오제를 제사한다(祭五帝)’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체제사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 뒤에는 비록 그것이 그렇다는 것은 알았지만, 편차編次가 이미 완성되어 미처 개정하지 못했는데, 이제 여덟 가지 체禘의 머릿부분에 이것을 표제로 하여 두었으니, 내 쇠약하고 게으름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경인庚寅年(1830) 초봄에, 정약용이 기록한다.”²¹⁾

19) 『春秋考徵』 권2, 「雜禮」, 〈序〉(『定本』 제14책, 308쪽).

20) 『春秋考徵』 권4, 「凶禮」, 〈贈槨二〉(『定本』 제14책, 280~281쪽).

21) 『春秋考徵』 권2, 「吉禮」, 〈禘之說〉(『定本』 제14책, 114~115쪽).

4차 추가수정(1833): “『주례』는 체禘를 말하지 않았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오제의 제사가 체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예를 물으면서 교를 말하지 않는 것인데, 장차 「대종백大宗伯」에서 말하는 호천상제昊天上帝의 제사도 교제사郊祭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주례』는 본래 교를 말하지 않았으나, 「소종백小宗伯」에 “사교四郊에 오제五帝를 제사한다”고 했고, 또 「하관夏官·절복씨節服氏」에 “교사구면郊祀裘冕”이라고 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상제를 제사한다’거나 ‘상제에게 여旅제사한다’고 할 뿐이거늘, 장차 상제를 제사하는 것은 교가 아니라고 말할 것인가? 계사癸巳년(1833) 맹추孟秋에 다시 쓴다.”²²⁾

12권본 『춘추고징』을 기준으로 할 때, 『춘추고징』 제12권의 「잡례雜禮」는 『춘추』 삼전에서 오례와 관련된 내용 중 의심스런 부분을 뽑아 『노례고』 몇 권으로 만들었던 것을 1821년 봄에 「잡례」로 개칭하고 10권본 『춘추고증』의 끝부분에 붙인 것이며, 12권본 『춘추고징』에 제12권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잡례」의 부록인 「좌전소잡左傳小箴」은 본래 1808년 겨울에 정약용이 ‘환공육년조桓公六年條’까지 『춘추』를 강학講學할 때 그 아들 정학유가 기록했던 것인데, ‘금부어차今附於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1821년 첫 번째 증보 때 부록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정약용은 10권본 『춘추고증』을 만든 뒤에 『오례통고五禮通考』 「길례吉禮」를 입수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씨육천지변鄭氏六天之辨」, 「선유논변지이先儒論辨之異」, 「정씨체제지변鄭氏禘祭之辨」 등을 지어 ‘교郊’와 ‘체禘’에 대한 논점을 수정증보하고 정현鄭玄(127~200)을 비

22) 『春秋考徵』 권2, 「吉禮」, 〈禘之說〉(『定本』 제14책, 115쪽).

못한 다른 학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오례통고』의 오류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이 1826년 늦겨울에 12권본 『춘추고징』에 제11권으로 편입된 것이다.

따라서 「길례」와 「홍례」만으로 구성된 10권본 『춘추고증』은 1808년에 초고가 기록된 뒤에 1812년에 1차례 수정된 재고로 완성되었으며, 1822년 「자찬묘지명」【集中本】을 전후로 하여 12권본 『춘추고징』으로 수정증보되었다. 12권본 『춘추고징』은 1821년 『노례고』 몇 권을 「잡례」로 재편집하고, 여기에 「좌전소잡」을 덧붙이면서 1차 수정증보를 한 뒤에 1826년에 「정씨육천지변」, 「선유논변지이」, 「정씨체제지변」 등을 통해 ‘교’와 ‘체’ 관련 논의를 2차로 수정증보하면서 12권본 체재를 완성했다. 1830년의 3차 추가수정 기록에 의하면, 1826년의 2차 수정증보를 통해 12권본 『춘추고징』의 편차는 일단 완성되었다. 이러한 편차 구성은 1830년대의 「열수전서총목록」을 통해 4책 12권본 체재로 재확인되었다. 1830년과 1833년에 두 차례 수정증보된 것은 편차의 재조정이 아니라 「체지설」을 일부 추가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체지설」의 후반부인 95자의 4차 증보 내용은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인 버클리본과 그 전사본인 규장각본에는 보이지 않고,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인 김영호본과 김영호본을 저본으로 삼은 신조선사본에만 나온다.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에서는 「체지설」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체1禘一【論禘之別有八，多出先儒之謬義.】’ 아래 편입되어 있었지만, 김영호본과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에서는 분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여 ‘체지설’이라는 소제목 붙여서 별도로 독립시켜 편집하였다.²³⁾ 실제로 1830년의 추가수정과 1833년의 추가수정은 각각 3차 수정고본인

23) 『春秋考徵』 권2, 「吉禮」, 〈禘之說〉(『定本』 제14책, 114~115쪽). 신조선사본 『與猶堂全書』 제2집 『春秋考徵』 권2, 「吉禮」, 〈禘一【論禘之別有八，多出先儒之謬義】〉.

버클리본과 4차 수정고본인 김영호본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김영호본은 4차 수정고본이고, 그 수정 내용을 반영한 『여유당전서』의 저본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과정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冊次	卷次	내용	伍禮	시기
1	1	序, 郊1-3	吉禮	(1) 10권본 『春秋考證』 1808 起草 1812 再稿
	2	郊4-5		- 「증신영로」(1817)
	3	郊6-9		(2) 12권본 『春秋考徵』 - 「自撰墓誌銘」【集中本】(1822)
2	4	社1-3, 禘之說(1830/1833), 禘1-4		禘之說 2차추가 (1830/1833)
	5	禘5-12, 時享1-3		
	6	時享4-7, 朔祭1-3, 廟制1-5		
3	7	違制 1-12	凶禮	
	8	謬義1-15, 駁義1-4, 卽位1-2		
	9	卽位3-12, 附見1條, 書葬1-4, 葬小君1-3		
4	10	葬小君4-13, 葬天王1-4, 葬諸侯1, 贈襚1-2		
	11	鄭氏六天之辨, 先儒論辨之異, 鄭氏禘祭之辨	『五禮通考』 「吉禮」郊禘	1826년 편입
	12	雜禮, 左傳小箴(1808)	魯禮考 (賓/軍/嘉)	1821년 봄 편입

표1. 『춘추고정』의 구성과 내용 및 증보 과정

2) 사암경집 버클리본과 여유당집 김영호본의 비교 검토

한편, 필사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로 인한 수정증보 지시사항을 반영하는 양상도 주목할 만하다. 수정증보의 반영은 대체로 버클리본에서 지시한 것이 규장각본에 반영되고, 김영호본에서 지시한 것이 신조선사본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반영 양상은 규장각본이 버클리본의 전사본이고 김영호본이 신조선사본의 저본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먼저, 버클리본에는 여러 명의 필사자들이 필사하면서 중복되거나 누

락된 부분이 나오는데, 규장각본에서는 버클리본에서 중복된 부분이 삭제되어 정리되고 버클리본에서 누락된 부분이 보충되는 등 버클리본을 개정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예컨대, 버클리본에서 권1 「교1郊一」 제 일 마지막에 누락된 ‘公之末年’을 난외에 소자小字로 보충하도록 한 부분, 권3 「교8郊八」의 두주頭註에 ‘子產曰有事於山林也’ 중 ‘山’ 앞부분에 ‘△’ 표시를 하고 ‘山藝’를 보충하도록 한 부분, 권11 「정씨육천지변」 두주에서 ‘四圭以祀天旅上帝鄭云祀天夏正郊天也上帝所郊’ 21자를 보충하도록 한 부분 등을 규장각본은 그대로 반영해서 개정했다.²⁴⁾

이에 비해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는 버클리본이나 규장각본과 달리 김영호본의 수정 지시를 반영했다. 예컨대, 김영호본에서는 권1 「교3郊三」의 ‘乃可立也今孔氏畏而諱之’의 앞뒤 부분을 서로 다른 필사자가 따로 적다가 서로 다른 쪽에 적어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주묵朱墨으로 표시한 것을 반영하여 삭제할 것을 지시했는데, 신조선사본은 이러한 삭제 지시를 충실히 반영하였다.²⁵⁾ 이러한 양상도 김영호본이 신조선사본의 저본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버클리본(3차수정고본): “然後此訟乃可 / 立也. 今孔氏畏而諱之, / 不敢提起, 唯執『禮記』諸文, 歸之謬誤, 『禮記』其伏乎?”

김영호본(4차수정고본): “然後此訟乃可 / 決也. 今孔氏畏而諱之, 不敢提起, 唯執『禮記』諸文, 歸之謬誤, 『禮記』其伏乎? / 歸之謬誤, 『禮記』其伏乎?”

24) 박종천, 「춘추고정 해제」, 10~11쪽.

25) 『春秋考徵』 권1, 「古禮」, 〈郊3〉(『定本』 제14책, 49쪽). “然後此訟乃可決也. 今孔氏畏而諱之, 不敢提起, 唯執『禮記』諸文, 歸之謬誤, 『禮記』其伏乎?”

신조선사본: “然後此訟乃可決也。今孔氏畏而諱之, 不敢提起, 唯執『禮記』諸文, 歸之謬誤, 『禮記』其伏乎?”

더욱 흥미로운 것은 버클리본에서 한 면을 비우면서 수정하는 양상을 김영호본도 그대로 따라서 수정한 반면, 이러한 글자의 출입 혹은 오류 여부도 버클리본-규장각본, 김영호본-신조선사본으로 동일하게 연결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교3」에서 위에서 거론한 부분을 살펴보면, 사암경집본의 경우에는 선행본인 버클리본과 버클리본의 전사본인 규장각본이 모두 소송을 제기하는 ‘입송立訟’의 의미에서 ‘此訟乃可立也.’로 표현한 반면, 신조선사본은 여유당집인 김영호본에 따라서 소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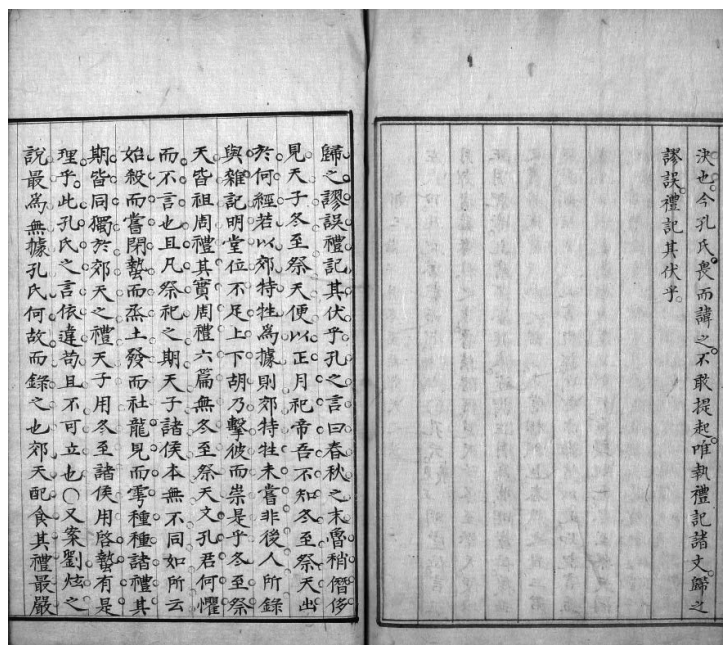


그림1. 김영호본의 「교3」 '결송'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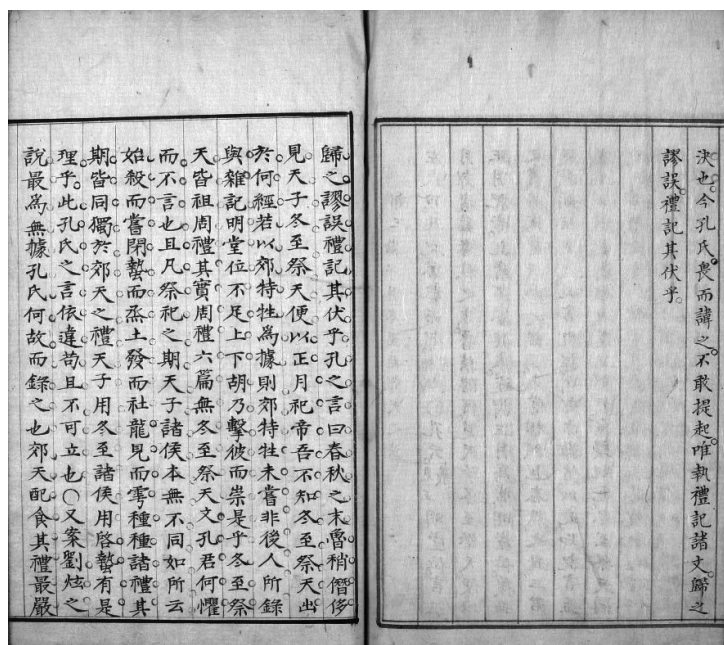


그림2. 버클리본의 「교3」 '입송' 수정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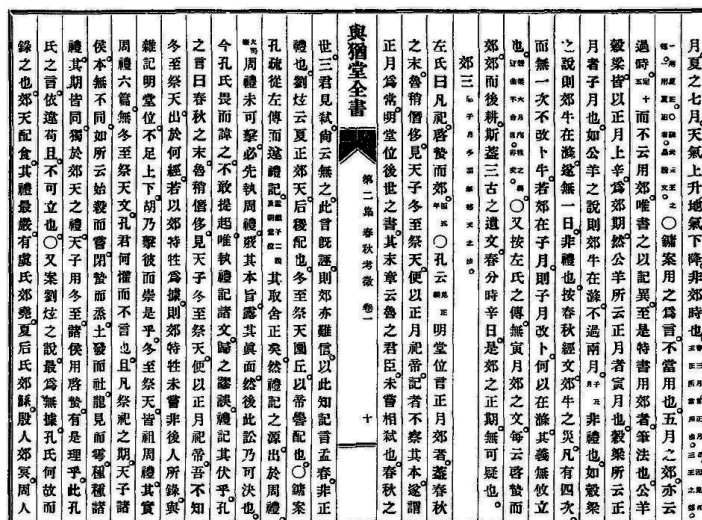


그림3. 『여유당전서』의 「교3」 수정 반영

판결하는 ‘결송決訟’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此訟乃可決也.’로 썼다.²⁶⁾ 이것도 신조선사본의 저본이 김영호본임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3」에는 ‘乃可立也今孔氏畏而諱之’의 사례처럼 중복된 것을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사과정에서 추가 증보하는 교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로 종이를 덧붙이는 양상도 나타났다. 아래 사례는 『주례周禮』 「대종백大宗伯」 이하 내용을 논하다가 실수로 『통전通典』을 누락하여 간지처럼 종이를 오려 덧대는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세보洗補’의 양상은 『경세유표』 필사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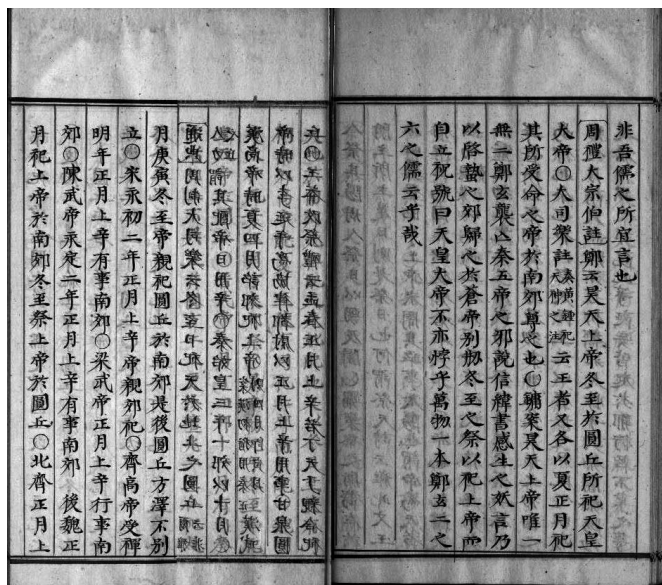


그림4. 버클리본의 추가 수정 부분

26) 같은 곳 참조.

27) 윤석호, 「가장본家藏本 『경세유표經世遺表』의 서지적 검토(1)—책제冊題 변화 전후의 집필 과정을 중심으로」, 64쪽 참조.



그림5. 김영호본 「교3」 교정 추가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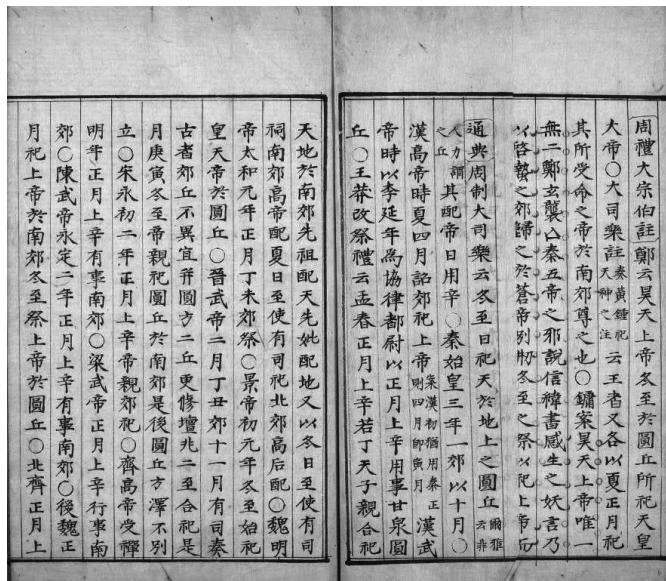


그림6. 김영호본 「교3」 교정 추가 이후

더욱 중요한 것은 김영호본이 덧댄 종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버클리본의 교정 지시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옮겨 쓰다가 나중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똑같이 종이를 덧대어 교정 지시사항을 표시해 두는 양상이다. 이는 4차 수정고본인 김영호본이 3차 수정고본인 버클리본을 옮겨 쓰다가 생긴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권 11 「정씨육천지변」 두주에서 ‘四圭以祀天旅上帝鄭云祀天夏正郊天也上帝所郊’ 21자를 보충하도록 버클리본에서 지시한 부분이 김영호본에서도 여전히 두주에 기록된 사례에서도 재삼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3차 수정고본인 버클리본을 앞에 두고 4차 수정고본인 김영호본을 필사했다가 나중에 동일한 패턴의 실수를 발견한 뒤에 이루어진 보완 조치로 보인다.

김영호본이 버클리본의 교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편집 실수를 반복하는 양상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영호본은 이러한 편집의 오류 수정 양상을 제3책 제10권에서도 한 번 더 반복했다. 사암경집 『춘추고징』 버클리본에는 본래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다산의 안설案說을 덧붙인 부분이 제대로 들어 있는데,²⁸⁾ 김영호본에서는 무슨 까닭인지 실수로 한 칸을 띄운 채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을 인용한 부분을 먼저 썼다가 나중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종이를 오려서 덧붙이는 방식으로 편집 추가를 지시해 두었다. 예컨대, 『춘추고징』 10권 「장천왕葬天王3」 부분을 살펴보면, 김영호본에서 왼쪽 면의 중간에 3차 수정고본을 전사하다가 빠진 부분을 비워 두었다가 오른쪽 그림 우측에 종이를 덧붙였는데, 그것이 원

28) 『春秋考徵』 권4, 「凶禮」, 〈葬天王3〉(『定本』 제14책, 270~271쪽). “公羊曰: ‘王者不書葬, 此何以書? 不及時書, [葬匡王·景王之屬] 過時書, [葬桓王] 我有往者則書.’” ○鏞案, 襄王七月而葬, 其所云‘過書’·‘不及書’者, 不攻自破, 於是別生義理, 曰‘我有往則書’. 若然他王之葬, 我皆不往乎? 其義之迂曲而不中理, 類皆如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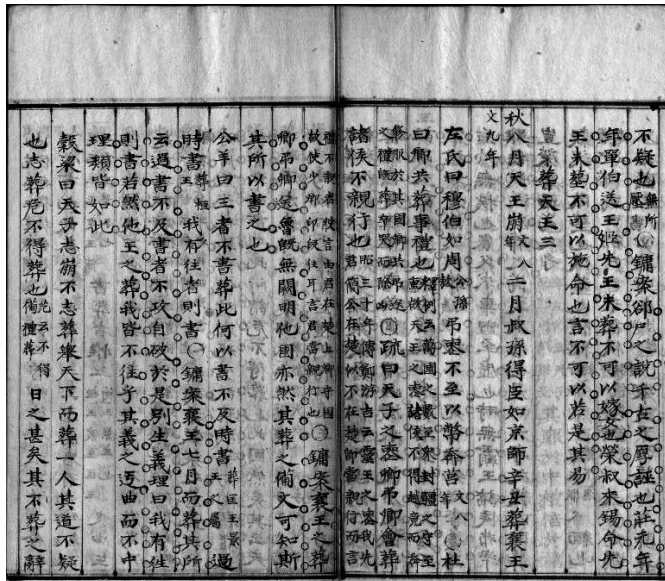


그림7. 버클리본 10권 「장천왕3」의 편집



그림8. 김영호본 10권 편집 추가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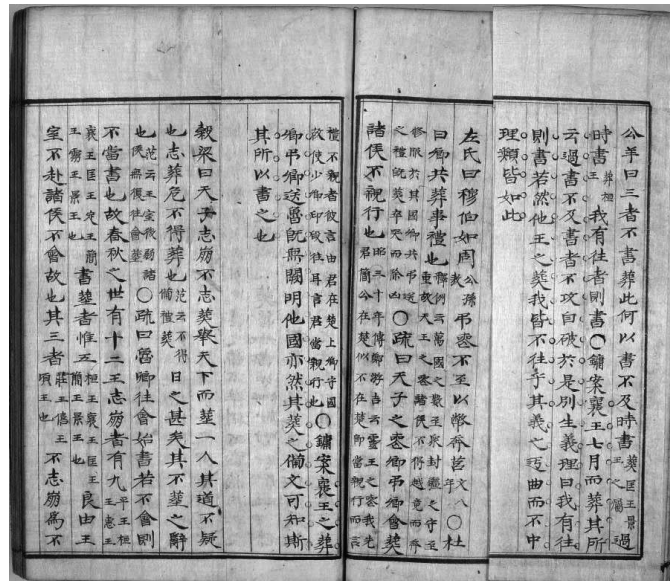


그림9. 김영호본 10권 편집 추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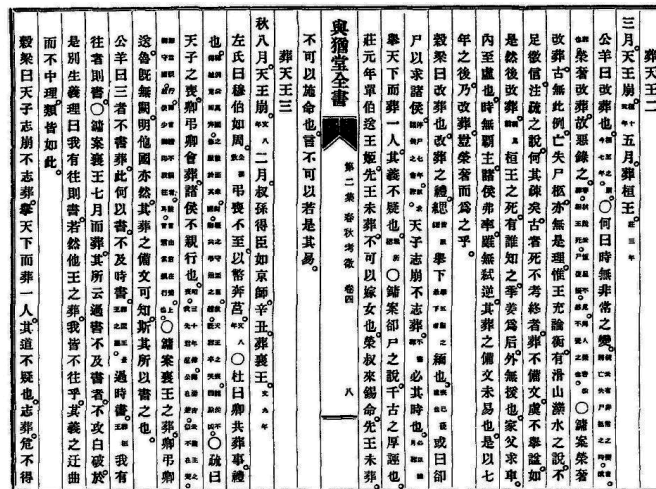


그림10. 신조선사본의 김영호본 편집 추가 반영

쪽 면의 중간 공백 부분에 들어가야 한다. 실제로 신조선사본 『여유당 전서』의 『춘추고징』에서는 김영호본에서 교정상 추가할 것을 지적해둔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어쩌면 3·4차 수정고본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11권과 12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10권 부분에서는 3차 수정고본이 아닌 2차 수정고본의 10권 부분을 보고 옮기다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2차 수정고본 역시 이 부분에서 동일한 편집 추가 수정을 기록해 두었는데 미처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쓰다가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김영호본의 편집 추가 지시사항이 버클리본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3차 수정고본에는 없는 4차 수정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이 버클리본에는 없고 김영호본에만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신조선사본이 김영호본을 따른 사례들은 상당히 많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한 가지 유형을 소개할 것이다. 예컨대, 김영호본은 「유의謬義15」에서 실수로 관련된 경문經文만 쓰고 전문傳文을 누락했으나, 그 다음에 오는 「박의駁議」조를 모두 기록한 뒤에야 비로소 누락을 알아차린 뒤에 「즉위卽位」조를 시작하기 전에 누락된 전문傳文은 물론 해당 경문까지 포함해서 뒤늦게 「박의5」 뒤에 덧붙이는 한편, 「위의〈유의〉의 끝에 있어야 한다」(當在上謬義之末)는 편집 수정 지시 사항을 주묵朱墨으로 썼으며, 〈유의15〉 조목 아래에는 「전문은 아래에 보인다」(傳文見下)라고 주묵으로 기록했다.²⁹⁾ 이렇듯 정고본 단계의 최종 수정고본인 김영호본은 이러한 지시 사항 추가를 통해 누락된 조목 편집의 오류를 수정했고, 이러한 수정 사항은 신조선사본에 제대로 반영되었다.

29) 김영호본 『春秋考徵』3, 「謬義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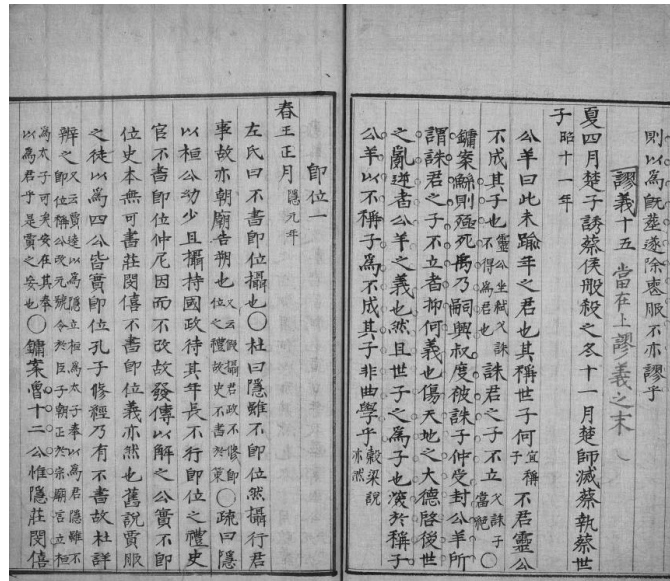


그림 11. 김영호본의 「謬義15」 추가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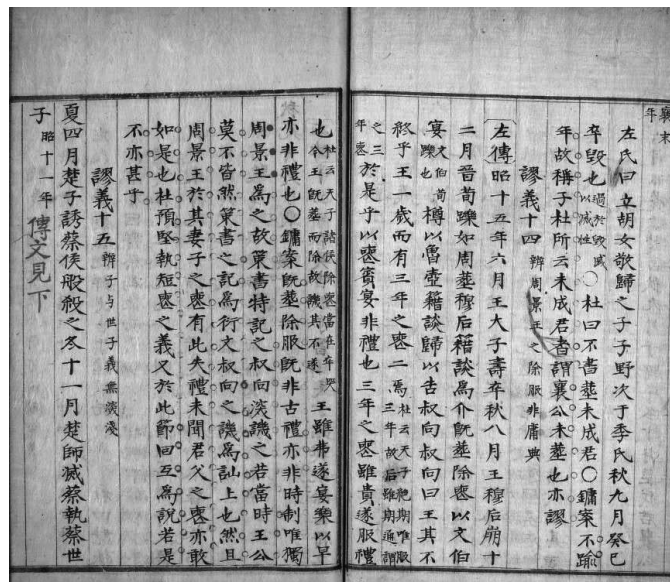


그림 12. 김영호본의 「謬義15」 보충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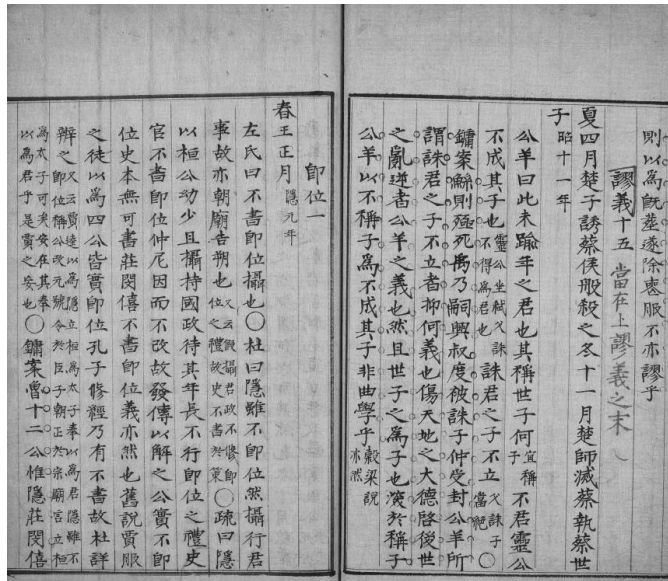


그림 13. 버클리본의 「謬義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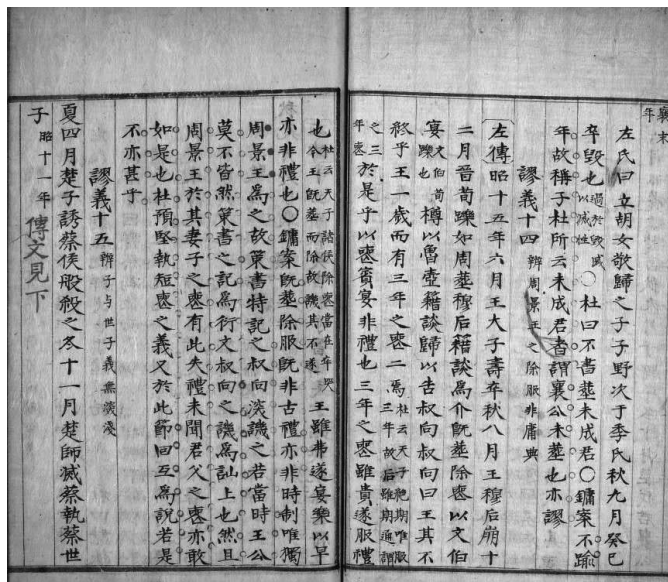


그림 14. 버클리본의 「駁義3」

이와는 달리 버클리본에서는 「유의15」의 경문과 전문이 이어지다가 ‘啓後世’에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데, 정작 그 다음 쪽에는 「유의15」의 뒷 문장³⁰⁾이 아니라 갑자기 「박의2」의 마지막 부분인 ‘之制乎’가 등장한 뒤에 바로 「박의3」으로 연결되었다. 뒤에 나와야 할 「유의15」 후반부부터 「박의1」과 「박의2」가 생략 혹은 누락된 것이다. 사암경집 『춘추고정』 중에서도 규장각본은 버클리본과 내용과 글자의 배치가 완전히 일치하면서도 버클리본에서 누락된 해당 부분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의도적인 삭제나 후대의 편집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필사자가 종이를 넘기며 필사하다가 ‘啓後世’의 다음 쪽에 이어지는 「유의15」 후반부 글자부터 「박의1」을 거쳐 「박의2」의 마지막 부분인 ‘之制乎’ 바로 앞쪽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실수로 통째로 건너뛰면서 누락시킨 것이며, 편집과정에서 내용의 추가보완이나 의도적인 삭제를 한 부분이 아니다.

한편, 김영호본에만 나오는 특이한 수정사항도 있다. 김영호본 『춘추고정』 11권의 「정씨육천지변」 앞부분에는 두주頭註로 ‘十行皆當降一格書之’라는 수정 지시가 나온다. 이는 필사자가 한 면을 모두 경문보다 한 칸(一格) 낮추어 써야 하는 규칙을 잠시 잊고 실수로 경문처럼 한 칸 간격을 무시한 채 썼기 때문에 규칙에 맞게 한 칸 낮추어 다시 쓰도록 지시한 것이다.

30) 『春秋考徵』 권4, 「凶禮」, 〈葬天王3〉(『定本』 제14책, 218쪽). “啓後世之亂逆者, 公羊之義也. 然且世子之爲子也, 深於稱子. 公羊以不稱子爲不成其子, 非曲學乎?【穀梁說亦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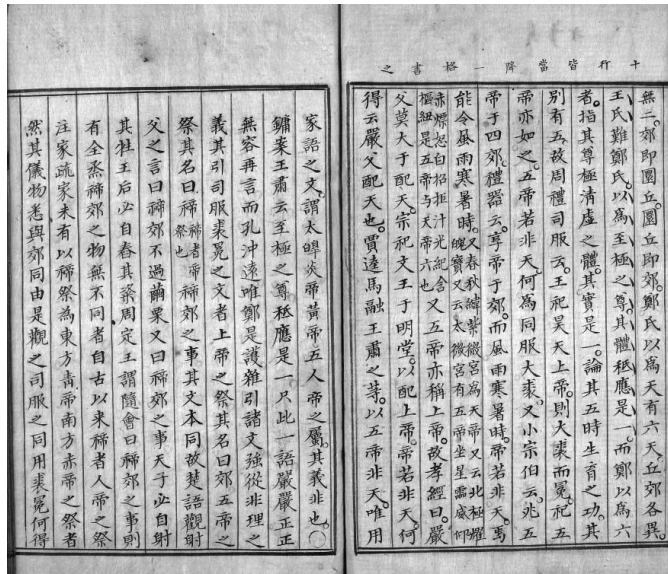


그림15. 김영호본 11권의 10행 한 칸(一格) 수정 지시

3) 『춘추고징』 필사본에 나타나는 여유당집 권차의 오류와 수정 양상

한편 『춘추고징』 필사본들은 『여유당집』 권차 표기에서 흥미로운 혼동과 오류의 양상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혼동과 오류의 양상은 필사본의 계열 구분과 선후 관계를 판정하는 데 일정한 단서를 제공한다.

먼저, 『춘추고징』 필사본들은 권차의 혼동과 오류 측면에서 사암경집 계열의 필사본들과 여유당집 계열의 필사본으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실제로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인 버클리본과 그 등사본인 규장각본이 모두 『춘추고징』 1권부터 6권까지 여유당집 권차를 145권부터 150권으로 기록하고 7권부터 10권까지는 145권부터 148권으로 기록하여 권차 중복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반면,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인 김영호

본은 『춘추고징』 전12권에 여유당집 권차를 145권부터 156권까지 혼동 없이 순서대로 정연하게 기록했다.

『춘추고징』 권차	사암경집 수정고본 계열 필사본		여유당집 수정고본 (가장본/김영호본)	여유당집 책차
	버클리 수정고본	규장각참서관실 등사본		
1	與猶堂集卷之 百四十五	與猶堂集卷之 百四十五	與猶堂集卷之百四十五	54
2	與猶堂集卷之 百四十六	與猶堂集卷之 百四十六	與猶堂集卷之百四十六	
3	與猶堂集卷之 百四十七	與猶堂集卷之 百四十七	與猶堂集卷之百四十七	
4	與猶堂集卷之 百四十八	與猶堂集卷之 百四十八	與猶堂集卷之百四十八	55
5	與猶堂集卷之 百四十九	與猶堂集卷之 百四十九	與猶堂集卷之百四十九	
6	與猶堂集卷之 百五十	與猶堂集卷之 百五十	與猶堂集卷之百五十	
7	與猶堂集卷之 百四十五	與猶堂集卷之 百四十五	與猶堂集卷之百五十一	56
8	與猶堂集卷之 百四十六	與猶堂集卷之 百四十六	與猶堂集卷之百五十二	
9	與猶堂集卷之 百四十七	與猶堂集卷之 百四十七	與猶堂集卷之百五十三	
10	與猶堂集卷之 百四十八	與猶堂集卷之 百四十八	與猶堂集卷之百五十四	57
11	與猶堂集卷之 五十五	與猶堂集卷之 五十五	與猶堂集卷之五十五	
12	與猶堂集卷之 百五十六	與猶堂集卷之 百五十六	與猶堂集卷之百五十六	

표2. 『춘추고징』 필사본의 권수제에 나타난 『여유당집』 권차의 비교

권차 혼동의 오류를 수정한 김영호본은 권차 혼동의 오류가 있는 버클리본보다 후행본이다.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인 버클리본과 규장각본은 여유당집 권차에서 동일한 오류를 공유하는 반면,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인 김영호본은 그러한 오류를 일관된 권수로 교정하려고 했기 때



그림 16. 버클리본 『춘추고정』 11권 권차 오류

문이다. 실제로 모든 『춘추고정』 필사본들은 1권부터 6권까지 『여유당집』 54책과 55책에 해당하는 『여유당집』 권145부터 권150까지 권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암경집 필사본들은 『여유당집』 56책에 해당하는 권차를 권145부터 권147로 잘못 기록했으며, 『여유당집』 57책에 해당하는 권차를 권148, 권55, 권156으로 잘못 기록했다. 이에 비해 여유당집 계열의 필사본인 김영호본은 56책과 57책의 권차를 권151-156으로 수정하면서 오류 없는 일관된 권수 체계를 유지했다. 다만 모든 필사본들이 『춘추고정』 11권의 여유당집 권차를 '55'로 동일하게 기록한 것은 4차 수정고본인 김영호본이 3차 수정고본인 버클리본의 오류를 바로잡으려 하다가 일부 놓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55권으로 적어야 할 권차에서 실수로 '百'을 누락한 오류는 10권본에서 12권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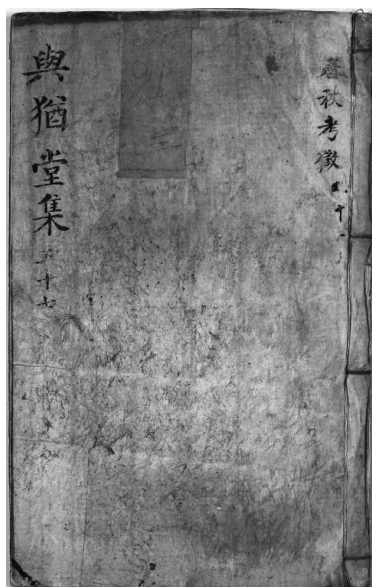


그림17. 김영호본 『춘추고정』의 표지

증보하면서 생긴 권차의 혼동이 수정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또한 김영호본에는 표지 위에 책차를 표시했다. 이는 김영호본이 4차 수정고본으로서 『춘추고정』을 여유당집 54·57책으로 편성해서 『열수전서』를 간행하기 위한 저본이자 출판 직전의 최종 수정고본이자 정고본일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유당집』 목차의 정렬은 『열수전서』 체계를 구성하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김영호본은 표지 오른쪽에는 소자小字로 ‘춘추고정’과 춘추고정 권차와 함께 쓰여 있고, 왼쪽에는 대자大字로 ‘여유당집’이 여유당집 책차冊次와 더불어 적혀 있다. 김영호본의 여유당집 책자는 54·57책으로서, 「증신영로」(1817)부터 「자찬표지명」(1822)까지 지속적으로 순서가 유지되고 권수가 확장되는 가운데 경집經集부터 시작되는 『여유당집』 체제 속에서 『춘추』가 『시경』,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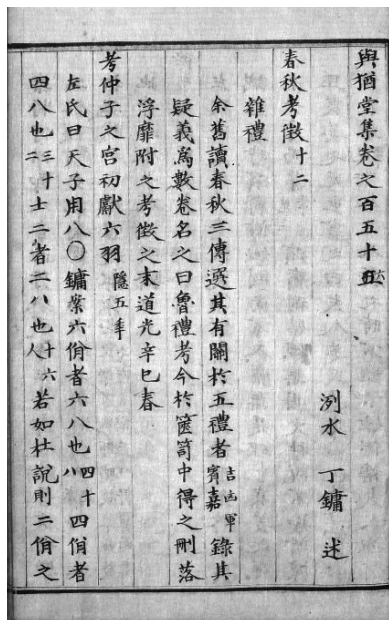


그림18. 김영호본 12권의 권차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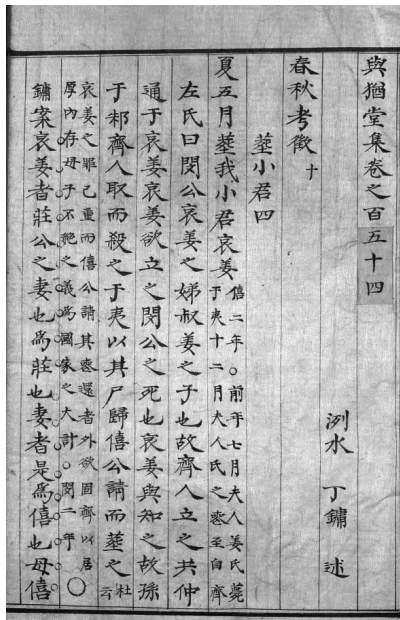


그림19. 김영호본 10권의 권차 세보

서, 『예경』, 『악경』, 『주역』에 이어 육경六經의 마지막에 위치하며,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 사서四書보다는 앞에 위치하는 사실을 반영한다.³¹⁾

김영호본이 사암경집본의 권차 오류를 수정한 방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영호본은 『춘추고정』 제3책(『여유당집』 56책)의 오류는 바로 잡았으나, 제4책(『여유당집』 57책) 10권의 권수제卷首第인 ‘與猶堂集卷之百五十四’에서 ‘五十四’ 부분은 종이를 덧붙여서 세보했다. 또한 11권의 권수제는 본래 ‘卷之百五十五’로 써야 하지만, 사암경집본의 오류를 따라 ‘百’이 누락된 채 ‘與猶堂集卷之五十五’로 적었으며, 권12은 처음에는 ‘與

31) 김보름, 앞 논문의 표를 참조.

猶堂集卷之百五十五'로 적었다가 '五'를 '六'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세보 및 수정은 10권본 『춘추고증』에서 12권본 『춘추고정』으로 증보됨에 따라 여유당집 권차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와 수정 양상이다.

4) 『사社1』의 권차 재편집

: 『여유당전서』 저본으로서의 김영호본의 위상 확증

『춘추고정』 필사본의 「춘추고정목차」는 10권본 『춘추고증』에서 12권본 『춘추고정』으로 증보되는 변화의 과정과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12권본 『춘추고정』의 본문 내용을 반영한 목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암정집 계열의 『춘추고정』 3차 수정고본인 버클리본과 그것을 등사한 규장각참사관실등사본은 물론, 여유당집 계열의 『춘추고정』 4차 수정고본인 김영호본까지도 모두 1권부터 10권까지의 10권본 목차만 존재하며, 11권과 12권 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춘추고정목차」가 1812년에 재고再考 편정시까지의 10권본 『춘추고증』 체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12권본 『춘추고정』으로 수정증보되는 과정에서도 증보된 내용을 반영한 목차로 개정하지 못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가장본 계열의 『민보의』 초기 필사본들이 상/하 2권 체재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1권을 추가하여 실제로 본문이 상/중/하의 3권 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권 체재의 목차를 유지하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³²⁾ 그러나 최근 그 실체가 확인된 김영호본 『민보

32) 박종천, 「『민보의(民堡議)』 필사본에 대한 연구」 참조.



그림20. 버클리본의 1책 3권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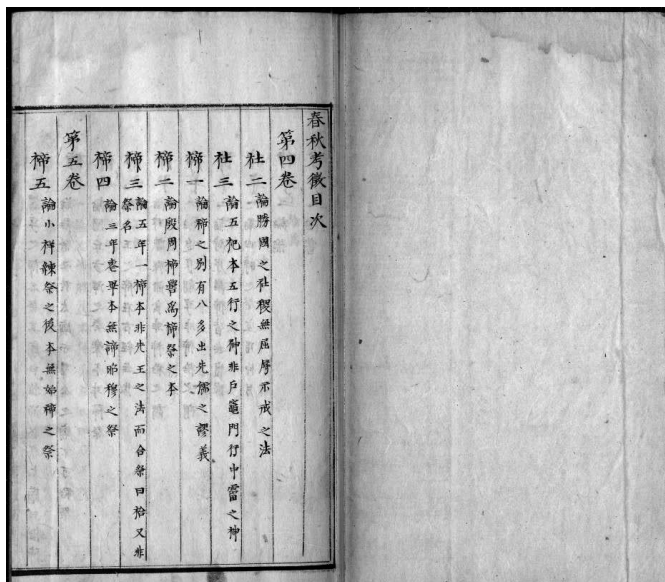


그림21. 버클리본의 2책 4권 목차



그림22. 김영호본의 1책 3권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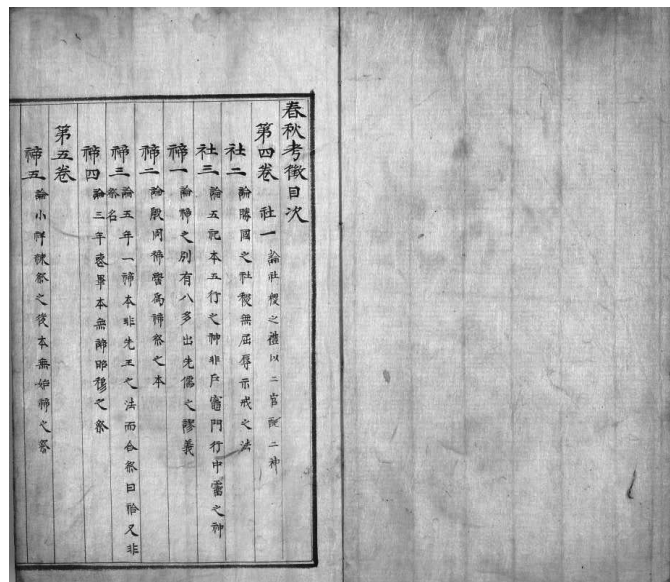


그림23. 김영호본의 2책 4권 목차

의』가 3권 체제의 목차를 완성하여 본문의 수정증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간행에 대비하는 정고본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 것과는 달리, 『춘추고정』 필사본들은 12권본의 본문에 상응하는 목차의 수정까지 진행하지는 못했다.³³⁾

한편, 「춘추고정목차」의 편집 수정 양상은 본문의 편집 수정 양상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버클리본에서는 기존의 목차대로 ‘사社1’ 조목이 1책 권3의 본문 마지막에 편집되어 있고, 2책 권4의 본문이 ‘사社2’ 조목으로 시작하는 반면, 김영호본에서는 ‘사1’ 조목을 1책 권3의 본문 마지막에서 빼내어 2책 권4의 본문 시작 부분에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목차에 ‘사1’을 억지로 배치하기 위해 2책 4권의 권차 바로 하단에 ‘사1’ 조목을 추가로 적어넣는 고식적 기재 방식을 선보였다. 그러나 1책 3권의 목차의 마지막의 ‘사1’ 조목을 삭제한다는 삭제 지시를 미처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1’ 조목이 1책 3권 목차의 마지막 부분과 2책 4권의 권차 바로 하단에 모두 보이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목차의 변화 양상은 3차 수정고본인 버클리본에서 4차 수정고본인 김영호본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1’ 조목이 1책에서 2책으로 본문을 재편집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편집 재구성은 새로운 필사를 통해 별도의 정고본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3차 수정고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4차 수정고본의 기존 본문 옆에 새로운 권수제와 권차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추가하거나 기존 본문의 권수제와 권차를 삭제할 것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김영호본에서는 본래 버클리본 1책 권3의 마지막에 있던 ‘사1’ 조목을 그대로 옮겨서 2책 권4의 제일 처음으로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 행

33) 김영호본 『민보의』는 정약용 사후 다산 후손가의 필사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3장을 참조하라.

을 벗어난 란외에 ‘春秋考徵 四, 與猶堂集卷之百四十八 洌水 丁鏞 述’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편집 수정 사항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사2’ 조목 앞에 권수제와 권차로 기록되었던 ‘與猶堂集卷之百四十八 洌水 丁鏞 述 春秋考徵 四’를 삭제하도록 편집 수정 사항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원고 분량의 형평성을 고려했던 버클리본과는 달리, 김영호본이 1책 1-3권을 ‘교’에 대한 설명으로 일원화하고 ‘사1’을 ‘사2’와 함께 2책의 처음에 배치하여 조목간의 분류와 구분에 따른 편의성을 도모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차 수정과 정까지만 해도 없었던 이런 편집의 변화가 4차 변화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편집의 변화는 183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가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인 버클리본이 아니라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인 김영호본의 편집에 따라 『춘추고징』 1책에 해당하는 『여유당전서』 33권에는 ‘교郊9’조까지 포함하고, ‘사社1’조는 2책에 해당하는 『여유당전서』 34권으로 편집하였다는 점이다. 『춘추고징』 필사본들의 이러한 편집 수정 양상은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가 선행본인 3차 수정고본 사암경집 계열의 버클리본이나 그 전사본인 규장각본이 아니라 4차 수정고본인 여유당집 계열의 김영호본을 저본으로 삼았다는 결정적 증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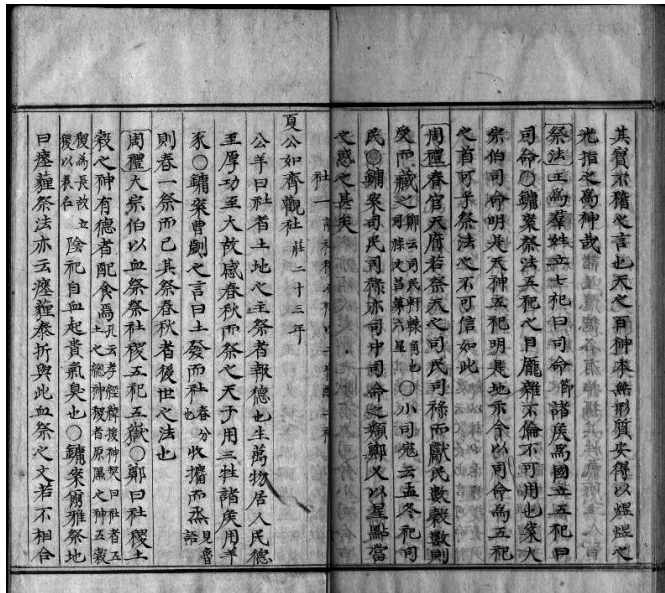


그림24. 버클리본의 「사1」 편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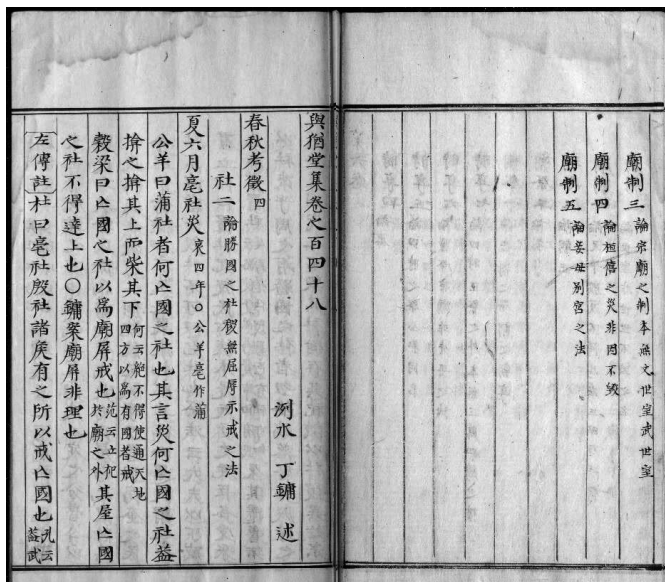


그림25. 버클리본의 「사2」 편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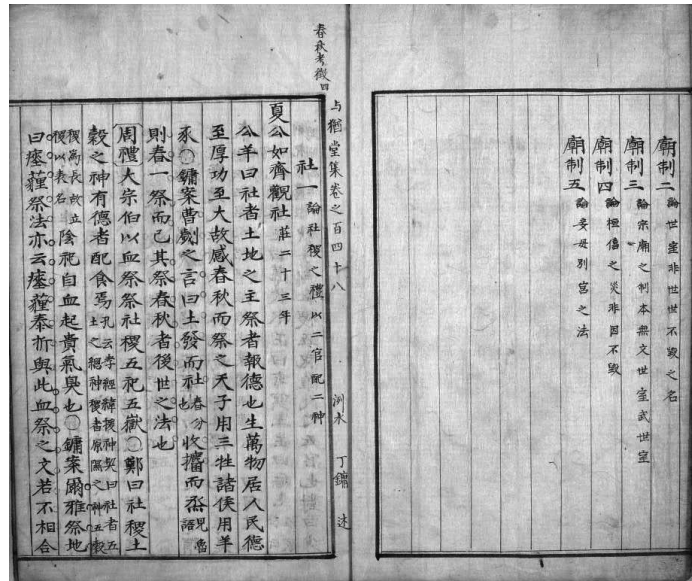


그림 26. 김영호본 「사1」의 재편집



그림 27. 김영호본의 「사2」의 재편집

3. 가장본 『민보의』에 대한 문헌적 검토

1) 『민보의』 필사본의 전승 계통과 변화 양상

『민보의民堡議』는 조선 후기 민보民堡 방위 전략에 대한 정약용의 구상을 담은 저술로서, 1812년 봄에 총 3권으로 완성되었다.³⁴⁾ 이 책은 병인양요 당시 총융사로서 프랑스 함대를 막았던 신관호申觀浩(1810~1884)의 『민보집설民堡輯說』을 중심으로 하는 19세기의 민보방위론의 선구적 저술로서 국방 분야에 실제적인 역사적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관아의 왜적 방어와 수성修城 분야에서 『목민심서牧民心書』 저술에도 직접 활용되었다.³⁵⁾ 또한 19세기 국방정책은 물론 한말韓末과 일제 강점기에 일어났던 의병義兵활동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약용의 저술 가운데서도 눈에 띄게 다양한 형태의 필사본들이 제작되고 유통되었다.³⁶⁾

필자는 선행연구³⁷⁾를 통해 『민보의』 필사본들이 기본적으로 ‘與猶堂集 卷181-卷183’의 권수제를 지닌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과 내용이나 권수제가 없거나 형식에서 일정한 변형이 있는 비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민보의목차」의 비교를 통해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들이 최고最古의 필사본으로 추정되는 여유당전서보유본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시 상권/□권 체재의 목차를 지닌 사암

34) 丁奎英 編, 『侯菴先生年譜』, 영인본, 正文社, 1984, 174쪽.

35) 『牧民心書』 권9, 「兵典」, 〈禦寇〉(『定本』 제28책, 382~384쪽); 『牧民心書』 권12, 「工典」, 〈修城〉(『定本』 제29책, 181~182쪽).

36) 박종천, 「『민보의(民堡議)』 필사본에 대한 연구」, 147쪽. [표1] 『민보의』 필사본 목록 비교표 참조.

37) 같은 논문 참조.

별집 侯菴別集 계열 필사본과 상권/하권 체제의 목차를 지닌 비사암 별집 계열 필사본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형태의 변형을 고려해 볼 때 사암별집 계열 필사본들이 비사암별집 계열 필사본들보다 더 선행본이고, 본문 글자와 각대 그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사암별집 계열 필사본 중에서는 여유당전서보유본에서 버클리본으로 이어지는 사암별집A본이 정다산전서본과 규장각본 등의 사암별집B본보다 선행본이며, 여유당전서보유본이 모든 사암별집 계열 필사본과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의 공통 저본이 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보의』 필사본 본문이 ‘여유당집 권181-권183’으로 각권이 모두 내제內題의 권수제卷首題로 시작하는 3권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선행연구 당시까지 발견된 19종의 필사본 『민보의』의 「민보의목차民堡議目次」는 모두 2권 체계이고 3권 체계의 목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³⁸⁾ 3권 체계의 본문과 2권 체계의 「민보의목차」가 서로 다른 까닭은 본래 민보民堡의 방위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된 2권 체계였던 『민보의』가 1812년에 이르러 처음에는 별도의 저술이었던 「천과도설天耙圖說」, 「호창거설虎僂車說」, 「대둔산축성의大苴山築城議」 등 민보 관련 각종 기물과 축성築城 논의를 새롭게 증보하면서 3권 체계를 갖춘 채 완성되었으나, 새롭게 증보된 3권 체계의 본문에 맞추어 2권 체계의 목차를 3권 체계로 미처 수정하지 못한 채 2권 체계의 목차를 후행본들이 그대로 전사했기 때문이다.³⁹⁾

이러한 권차 구성 체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민보의』에서 다루는 내용과 형식도 1·2권과 3권은 서로 분명한 차이가 난다. 『민보의』는 1권

38) 같은 논문, 149~150쪽. 참고로 이 논문 집필 시에는 김영호본을 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 19종의 필사본을 비교 검토하였다.

39) 같은 논문, 150쪽 참조.

의 「총의總義」와 ‘제制’ 및 2권의 「민보답객난民堡答客難」을 제외하면 모두 ‘법法’으로 되어 있는 반면, 3권은 ‘도설圖說’과 ‘의議’로 구성되었다. 실제로 정약용은 이중협李重協이 강진병마우후康津兵馬虞侯로 일했던 1811년부터 『민보의』가 3권 체계로 완성된 1812년 봄 사이에 「대둔산축성의」를 지었고,⁴⁰⁾ 「호창거설」을 1812년 봄에 완성했다.⁴¹⁾ 또한 3권의 「천과도설」에 대해 1권의 「민보수어지법民堡守禦之法」의 ‘천과天耙’에 대한 설명에서 주석으로 ‘별도로 저술이 있다’고 기록한 것⁴²⁾으로 볼 때, 『민보의』는 상권과 하권의 2권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본래 『민보의』에 속하지 않았던 「천과도설」과 더불어 「호창거설」, 「대둔산축성의」 등 민보와 연관된 3종의 ‘도설圖說’과 ‘의議’를 별도로 한 권으로 묶어서 『민보의』에 편입해서 3권 체계의 『민보의』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2) 『민보의』 필사본 전승과 최종 수정고본/정고본으로서의 김영호본

이런 상황에서 최근 그 실체가 새롭게 확인된 김영호본 『민보의』는 정고본의 형식적 특징대로 4침선장의 필사본으로 만들어졌으며, 표지 왼쪽에는 ‘민보의民堡議’가 소자小字로 쓰여 있고, 오른쪽에는 ‘여유당집與猶堂集’이 대자大字로 적혀 있다. 이는 표지에 ‘사암별집俟菴別集’

40) 『民堡議』 권1, 「總義【五則】」(『定本』 제37책, 353쪽). “今年春【嘉慶壬申春】” 『民堡議』 권3, 「大苞山築城議【爲虞侯李重協作】」(『定本』 제37책, 396~404쪽).

41) 『民堡議』 권3, 「虎俚車說」(『定本』 제37책, 395쪽). “今年春【嘉慶壬申春】”

42) 『民堡議』 권1, 「民堡守禦之法」(『定本』 제37책, 369쪽). “天耙者, 所以拵附城之賊也, 其齒如槍, 其背有鐵, 其本有繫, 欲其固也, 其末有索, 欲其還也, 古所不言, 今亦略之【別有著】.” 『民堡議』 권3, 「天耙圖說」(『定本』 제37책, 391~3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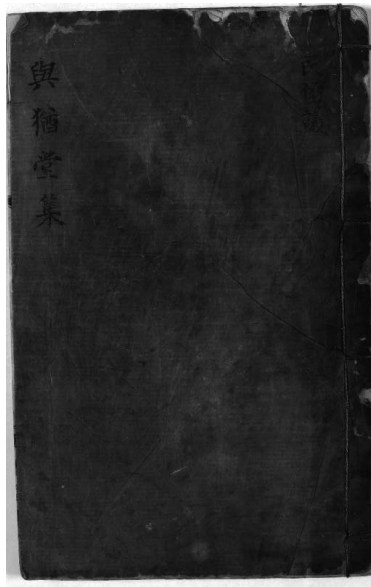


그림28. 김영호본 『민보의』

으로 기재된 사암별집 계열 필사본들과 분명하게 대조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춘추고정』이 ‘사암경집’에서 ‘여유당집’으로 「자찬묘지명」 단계를 지나서 「열수전서총목록」 단계로 나아가는 것과 유사하게 「열수전서총목록」에 포함된 『민보의』의 정고본을 지향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영호본 『민보의』가 가장본들 중에서도 버클리본을 포함한 사암별집본보다 후행본이라는 것은 다른 사암경집 및 사암별집 필사본들의 양상과 유사하다.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1869~1943)가 1906년부터 1918년 사이에 조선에서 수집해서 1920년 일본으로 유출했다가 다시 미국 버클리대학교에 팔려서 현재 아사미문고에 수장된 버클리본들은 대체로 다산 집안에서 소장하던 가장본 필사본들 중에서도 초기 수정고

본들이며, 이 가운데서도 사암경집 혹은 사암별집 계열의 필사본들은 규장각본을 비롯한 다른 사암경집 혹은 사암별집 필사본들보다 선행본이자 선본으로 보인다.⁴³⁾

특히 다음 사진에 보이듯이, 판심제版心題에 ‘여유당장與猶堂藏’이라는 소장처가 적혀 있는 것도 김영호본이 정고본定稿本일 가능성이 높은 가장본임을 확인시켜 준다. 김영호 소장 가장본 『대동수경大東水經』처럼 ‘여유당장’ 판심제에 20세기 초의 신식 연활자가 사용된 원고지라는 점에서 김영호본 『민보의』는 20세기 초 다산 후손의 필사본으로 추정된다.⁴⁴⁾ 이러한 판심제의 특징은 김영호본이 버클리본을 중심으로 하는 사암별집본들보다 후행본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편, 김영호본을 제외한 다른 가장본 계열 필사본들의 「민보의목차」는 모두 2권 체계를 갖춘 반면, 김영호본은 3권 체계의 「민보의목차」를 온전히 갖춘 유일한 『민보의』 필사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정고본의 형식을 갖춘 가장본 계열의 초기 필사본들 중 가장 선행본인 여유당전서보유본의 「민보의목차」는 상권/하권으로 2권 체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2권 체계의 목차는 1812년 『민보의』가 3권 체계로 증보된 이후에도 미처 수정되지 않은 채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들처럼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사암별집 계열 필사본들처럼 상권/□권으로 2권 체계로 변용되기도 했는데, 사암별집 계열 필사본들에서 □권으로 표시된 부분

43) 버클리본을 중심으로 하는 사암경집과 사암별집 계열의 필사본이 지닌 특징에 대한 연구로는 장동우, 「『여유당전서』 ‘경집經集’ 필사본에 관한 고찰—규장각본과 아사미문고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산학』 15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9; 김보름, 「丁若鏞 著作集의 形成과 傳承」; 노경희, 「다산 저술의 형성과 유전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박종천, 「다산 예집(禮集) 저술의 필사본 전승사 연구」; 「다산의 『논어』 주석서 전승에 대한 연구」; 「『민보의(民堡議)』 필사본에 대한 연구」 등 참조.

44) 노경희, 「『대동수경大東水經』의 이본과 서지적 성격 연구」, 『다산학』 3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0, 133~134쪽 참조.



그림29. 김영호본의 「민보의목차」

은 하권을 중권과 하권으로 재편하기 위해 고심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또한 사암별집본 중에서는 버클리본의 사암별집A본이 정다산전서본과 규장각본의 사암별집B본보다 선행본이며, 사암별집 단계 이후로는 가장본을 전사하거나 변용한 다양한 필사본들이 등장한다.⁴⁵⁾

요컨대, 가장본 『민보의』의 목차는 본래 2권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20세기 초 김영호본에 와서 본문과 괴리된 상권/하권의 2권 체계의 가장본 「민보의목차」를 실제 본문의 구성에 맞추어 다시 상권/중권/하권의 3권 체계로 바로잡았던 것이다. 따라서 「민보의목차」는 여유당전서보유본의 ‘상권/하권’ → 사암별집본의 ‘상권/□권’ → 김영호본의 ‘상권/중권/하권’을 거치면서 2권 체계에서 3권 체계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5) 박종천, 「『민보의(民堡議)』 필사본에 대한 연구」 참조.

2권 체계의 가장본 「민보의목차」와 3권 체계의 김영호본의 「민보의목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유당전서보유본과 사암별집의 2권 체계 「민보의목차」

上卷

民堡議一

1 總義【五則】

2 民堡擇地之法

3 堡垣之制【敵臺·角臺·陴制·壕牆·弔橋】

4 民堡守禦之法【藥湯·灰囊·糞砲·天耙·地蝟·陷馬坑·霹靂蘊·懸簾·挨牌】

下卷(여유당전서보유본) 혹은 □卷(사암별집본)

民堡議二

1 民堡編伍之法

2 民堡支糧之法

3 民堡農作之法

4 民堡警夜之法

5 民堡相救之法

6 海島設堡之法

7 山寺設堡之法

8 民堡規寇之法

9 民堡賞罰之法

10 民堡答客難【五則】

(2) 김영호본의 3권 체계 「민보의목차」

上卷

民堡議一

1 總義【五則】

2 民堡擇地之法

3 堡垣之制【敵臺·角臺·陣制·壕牆·弔橋】

4 民堡守禦之法【藥湯·灰囊·糞砲·天耙·地蝟·陷馬坑·霹靂蘊·懸簾·挨牌】

中卷

民堡議二

1 民堡編伍之法

2 民堡支糧之法

3 民堡農作之法

4 民堡警夜之法

5 民堡相救之法

6 海島設堡之法

7 山寺設堡之法

8 民堡規寇之法

9 民堡賞罰之法

10 民堡答客難【五則】

下卷

民堡議三

1 天耙圖說

2 虎俵車說

3 大茆山築城議【爲虞侯李重協作】

한편, 기존의 필사본들이 본래의 2권 체계를 유지하거나 본문과 맞지 않는 목차의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권으로 통합하거나 목차를 없애는 변형 양상을 드러내는 반면, 김영호본은 본문에 맞는 3권 체계 민보의 목차를 갖춘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10행 22자, 3권=1책, 1권 20장 내외 분량의 형식적 특성을 갖춘 가장본 계열 필사본 가운데서도 최종 수정고본이자 정고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김영호본의 글자는 여유당전서보유본에서 글자의 추가나 수정을 지시한 사항이 사암별집본에 반영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⁴⁶⁾ 물론 일부 글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⁴⁷⁾ 김영호본은 글자의 사용면에서 사암별집A본인 버클리본과 대체로 비슷하다.⁴⁸⁾ 따라서 김영호본은 여유당전서보유본을 비롯한 사암별집본들다 후행본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 글자의 출입이나 차이는 필사자의 습관이나 사소한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림의 경우에는 필사본의 계통 간에 더욱 분명한 차이가 나

46) 같은 논문, 158~159쪽 각주 15번. []는 보유본에서 추가 지시한 것이 사암별집본에 반영된 것이다. 『民堡議』 권1, 「總義【五則】」(『定本』 제37책, 354~355쪽). 「薩摩」; 『民堡議』 권1, 「民堡擇地之法」(『定本』 제37책, 359쪽). 「亦無由一時頓陷」; 『民堡議』 권1, 「民堡守禦之法」(『定本』 제37책, 370쪽). 「明松細研之前」; 『民堡議』 권3, 「大范山築城議【爲虞侯李重協作】」(『定本』 제37책, 396쪽). 「無所仰飲」; 『民堡議』 권3, 「大范山築城議【爲虞侯李重協作】」(『定本』 제37책, 404쪽). 「大范山」; 『民堡議』 권3, 「大范山築城議【爲虞侯李重協作】」(『定本』 제37책, 403쪽). 「宜自廟堂嚴立科條」 기타 추가와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논문, 163쪽 주석 20번 참조.

47) 예컨대, 여유당전서보유본과 버클리본의 ‘卒’이 김영호본에는 ‘率’로 되어 있다. 『民堡議』 권1, 「總義【五則】」(『定本』 제37책, 355쪽). 「編爲卒伍」 이 부분은 김영호본이 유사한 문자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周禮』 「地官」, 〈小司徒〉, “五人爲伍, 五伍爲兩, 四兩爲卒.”

48) 예컨대, 여유당전서보유본과는 달리 김영호본과 버클리본은 윤경을 ‘尹畊’으로 표기하고 있고, 여유당전서보유본에는 ‘此’로 되어 있으나 김영호본과 버클리본에는 ‘且’로 되어 있다. 『民堡議』 권1, 「民堡擇地之法」(『定本』 제37책, 359쪽). “然此諸病, 亦有救藥之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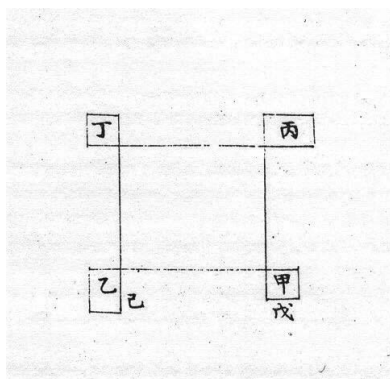


그림30. 정다산전서본의 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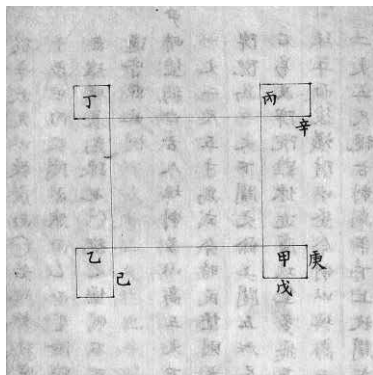


그림31. 김영호본의 각대

타난다. 특히 김영호본의 각대角臺 그림은 여유당전서보유본과 사암별집A본 계열과 동일하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정다산전서본과 규장각본과 같은 사암별집B본은 각대 그림에 ‘신辛’과 ‘경庚’이 표기되지 않은 반면, 여유당전서보유본과 사암별집A본인 버클리본은 ‘신辛’과 ‘경庚’이 분명하게 나타난다.⁴⁹⁾ 그런데 각대에 대한 『민보의』 본문의 설명을 보면 ‘신’과 ‘경’의 방면 표시는 필수적이다.⁵⁰⁾ 따라서 정다산전서본과 규장각본의 사암별집B본은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각대 그림의 양상을 「민보의목차」 및 본문의 수정과 연계해서 볼 때, 김영호본은 가장본 필사본 중에서도 사암별집B본이 아니라 여유당전서보유본과 사암별집A본 계통의 필사본에서 발전한 최종 수정 고본이자 정고본으로 보인다.

49) 같은 논문, 162쪽 참조.

50) 『民堡議』 권1, 「民堡守禦之法」(『定本』 제37책, 362쪽). “兩角俱短, 但救本城, 賊若附戊, 則甲角危矣. 從己放丸, 乃救戊面, 乙角之長, 不亦善乎? ○若甲之側面亦平行受敵, 則丙角亦宜拖長, 令得從辛放丸, 以救庚面. ○若地勢狹窄, 甲乙之間不過五十步, 甲丙之間亦然, 而乙丙皆險, 賊不能附, 則甲角雖無雉城, 未爲疎也.”

4. 맺음말

본 연구는 최근에 그 실체가 확인된 가장본 『춘추고징』과 『민보의』에 대한 문헌적 검토다.

먼저, 필자는 김영호본 『춘추고징』을 다양한 『춘추고징』 필사본들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들인 버클리본과 규장각본이 각각 1830년 이전의 3차 수정고본과 그 전사본인 반면, 최근 그 실체가 확인된 김영호 소장 가장본 『춘추고징』이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이자 1833년 이후에 수정하고 추가 보완한 4차 수정고본으로서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의 저본이 되는 정고본 단계의 필사본임을 밝혔다.

실제로 1812년에 「길례」와 「흉례」만으로 구성된 10권본으로 저술된 『춘추고증』은 1808년 초고가 기록된 뒤에 1812년에 1차례 수정한 재고로 완성되었으며, 1822년 「자찬묘지명」【集中本】을 전후로 하여 12권본 『춘추고징』으로 수정증보되었다. 12권본 『춘추고징』은 1821년 『노례고』 몇 권을 「잡례」로 재편집하고 여기에 「좌전소잡」을 덧붙이면서 1차 수정증보를 했으며, 다시 1826년에 「정씨육천지변」, 「선유논변지이」, 「정씨체제지변」 등을 통해 ‘교’와 ‘체’ 관련 논의를 2차로 수정증보하면서 12권본 체재를 완성했다. 1830년에 쓴 정약용의 기록처럼 1826년의 2차 수정증보를 통해 12권본 『춘추고징』의 편차는 일단 완성되었다. 이러한 편차 구성은 1830년대의 「열수전서총목록」을 통해 4책 12권본 체재로 재확증되었으며, 1830년과 1833년에 2번에 걸쳐 수정증보된 것은 편차의 재조정이 아니라 「체지설」을 일부 추가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1830년의 추가수정과 1833년의 추가수정은 각각 3차 수정고본인 버클리본과 4차 수정고본인 김영호본에서 그 실제 양상이 확인된다.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인 버클리본과 그 등사본인 규장각본이 각각

수정지시와 그 반영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유당집 권차에서 중복의 문제점을 동일하게 공유하는 반면,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인 김영호본의 편집과 수정 지시사항은 신조선사본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암경집본의 권차 중복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이 3차 수정고본 단계를 보여주는 반면,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은 4차 수정고본 단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양상에 더하여 김영호본이 버클리본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그러한 문제점을 편집과 수정 차원에서 바로잡는 조치를 하는 양상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는 김영호본이 버클리본보다 후행본이며 버클리본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최후 수정고본으로서 출간 직전의 정고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김영호본은 수정 지시사항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여유당전서』의 저본이다. 김영호본이 『여유당전서』의 저본이라는 것은 ‘사1’조의 권차 재편집 양상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실제로 『여유당전서』는 김영호본의 재편집에 따라 『춘추고정』 1책에 해당하는 『여유당전서』 33권에는 ‘교9’조까지 포함하고, ‘사1’조는 2책에 해당하는 『여유당전서』 34권으로 편집했을 뿐만 아니라, 김영호본에서 두주로 추가하거나 일부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기존의 목차대로 ‘사社1’ 조목을 1책 권3의 본문 마지막으로 배치한 버클리본과는 달리 ‘사1’ 조목을 2책 권4의 본문 시작 부분에 재배치한 김영호본의 편집에 따랐다. 김영호본의 목차와 본문에 나타난 ‘사1’ 조목의 재편집과 수정증보 양상은 4차 수정고본인 김영호본이 3차 수정고본인 버클리본보다 후행본인 결정적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롭게 그 실체가 확인된 김영호 소장 가장본 『민보의』가 2권 체계의 목차를 지닌 여유당전서보유본과 사암별집A

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3권 체계의 본문의 변화를 목차에 반영한 ‘여유당집’ 계열의 정고본임을 규명했다. 김영호본 『민보의』는 김영호 소장 가장본 『대동수경』처럼 ‘여유당장’ 판심제에 20세기 초의 신식 연 활자가 사용된 원고지라는 점에서 20세기 초의 다산 후손가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영호본 『민보의』는 모든 사암별집본들보다 늦게 만들어진 다산 후손가의 최후 수정고본으로서 『열수전서』 간행을 염두에 두고 정리한 정고본임이 확실하다.

요컨대,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인 김영호본 『춘추고징』과 김영호본 『민보의』는 모두 가장본인 동시에 최종 수정을 거쳐 『열수전서』로 간행할 예정이었던 정고본이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문헌적 검토와 전승사적 관점에서 볼 때, 『춘추고징』과 『민보의』에서 나타난 이러한 경향을 다산 저술 필사본 전반에 확대 적용하면, 사암경집 혹은 사암별집 계통의 필사본들은 초고본에서 수정고본 단계에 해당하는 초기 필사본들이고, 여유당집 계통의 필사본들은 대체로 수정고본에서 정고본을 거쳐 전사본에 이르는 후기 필사본인 경우가 많으며, 여유당집 계열의 필사본 중 최종 수정고본이 『열수전서』 간행을 위한 정고본으로서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의 저본이 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논문투고일 2021년 9월 23일, 심사확정일 2021년 9월 23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8일)

참고문헌

원전

『與猶堂全書 補遺』, 영인본, 경인문화사.

『與猶堂全書』, 신조선사.

『定本 與猶堂全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필사본 『春秋考徵』: 장서각본, 버클리본, 김영호본 등

필사본 『民堡議』: 여유당전서보유본, 버클리본, 정다산전서본, 김영호본 등

논문

김보름, 「丁若鏞 著作集의 形成과 傳承」,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16.

——, 「『여유당집』 체재의 성립에 관한 고찰」, 『다산학』 18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1.

김영호, 「『여유당전서』의 텍스트 검토」, 『정다산 연구의 현황』, 민음사, 1985.

노경희, 「다산 저술의 형성과 유전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다산 필사본 연구』, 사암, 2019.

——, 「『대동수경大東水經』의 이본과 서지적 성격 연구」, 『다산학』 3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0.

다산학술문화재단 편, 『다산 필사본 연구』, 사암, 2019.

박종천, 「다산의 『논어』 주석서 전승에 대한 연구」, 『다산학』 23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

_____, 「다산 예집(禮集) 저술의 필사본 전승사 연구」, 『다산학』 2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_____, 「『민보의(民堡議)』 필사본에 대한 연구」, 『다산학』 12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_____, 「춘추고징 해제」, 『정본 여유당전서 14: 춘추고징』,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박철상, 「다산 저작 고본의 제문제」, 『다산 필사본 연구』, 사암, 2019.

윤석호, 「가장본家藏本 『경세유표經世遺表』의 서지적 검토(1)—책제冊題 변화 전후의 집필 과정을 중심으로」, 『다산학』 3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0.

장동우, 「『여유당전서』 ‘경집經集’ 필사본에 관한 고찰—규장각본과 아사미문고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산학』 15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9.

丁奎英 編, 『俟菴先生年譜』, 영인본, 正文社, 1984

황병기, 「『역학서언易學緒言』의 성서成書 과정 연구—가장본家藏本을 중심으로」, 『다산학』 3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0.

국문요약

본 연구는 문헌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춘추고정』 필사본들을 비교검토하여, ‘사암경집’ 계열 필사본들인 버클리본과 규장각본이 각각 1830년 이전의 3차 수정고본과 그 전사본인 반면, 최근 그 실체가 확인된 김영호 소장 가장본 『춘추고정』이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이자 1833년 이후에 수정하고 추가보완한 4차 수정고본으로서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의 저본이 되는 정고본 단계의 필사본임을 밝혔다. 아울러 김영호 소장 가장본 『민보의』가 2권 체계의 목차를 지닌 여유당전서보유본과 사암별집A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3권 체계의 완전한 목차를 지닌 ‘여유당집’ 계열의 정고본임을 규명했다.

요컨대, 여유당집 계열 필사본인 김영호본 『춘추고정』과 김영호본 『민보의』는 모두 가장본인 동시에 최종 수정을 거쳐 『열수전서』로 간행할 예정이었던 정고본이다. 따라서 문헌적 검토와 전승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경향을 확대 적용하면, 사암경집 혹은 사암별집 계통의 필사본들은 초고본에서 수정고본 단계에 해당하는 초기 필사본들이고, 여유당집 계통의 필사본들은 대체로 수정고본에서 정고본을 거쳐 전사본에 이르는 후기 필사본인 경우가 많으며, 여유당집 계열의 필사본 중 최종 수정고본이 정고본으로서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의 저본이 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 『춘추고정』, 『민보의』, 가장본, 필사본, 사암경집, 사암별집, 여유당집, 여유당전서.

Abstract

An Philological Analysis on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of *Chunchu gojing*(『春秋考徵』) and *Minboui*(『民堡議』)

Park Jong-chun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have made an philological analysis on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of *Chunchu gojing*(『春秋考徵』) and *Minboui*(『民堡議』). Since these manuscripts were originally kept in Tasan Family House, but they are in Young-Ho Kim's collection. These two manuscripts are the final stage drafts edited and corrected by Tasan Jeong Yak-yong(丁若鏞, 1762~1836). They are the revised versions of the *Saam Gyeongjip*(『俟菴經集』, SG) series or the *Saam Byuljip*(『俟菴別集』, SB) series, and all copies of the SG or SB series in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are the previous copies of manuscripts in the *Yeoyudangjip*(『與猶堂集』, YJ). Especially, the books of *Chunchu gojing*(『春秋考徵』) in the Tasan's works in the *Complete Writings of Yeoyudang*(『與猶堂全書』, CWY) are derived from the final manuscript of *Chunchu gojing*(『春秋考徵』) in Young-Ho Kim's collection.

Key Words | *Chunchu gojing*(『春秋考徵』), *Minboui*(『民堡議』), the Tasan family collection's manuscripts, the *Saam Gyeongjip*(『俟菴經集』, SG), the *Saam Byuljip*(『俟菴別集』, SB) , the *Yeoyudangjip*(『與猶堂集』, YJ), the *Complete Writings of Yeoyudang*(『與猶堂全書』, CWY)

